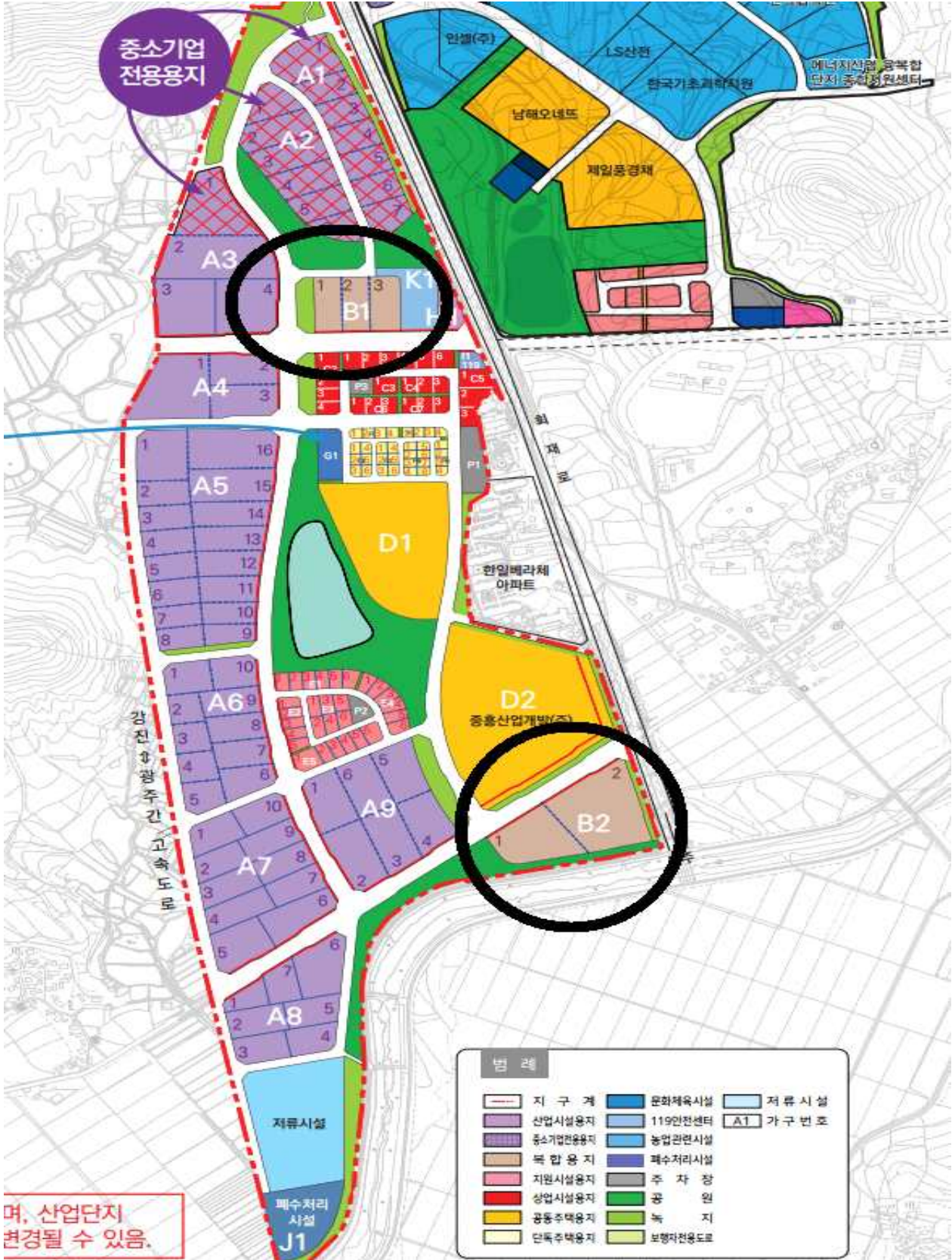


복합용지 위치도



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

구분		복합용지
건축물용도	도면표시	B1~B2
	허용용도	<p>[산업시설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중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. 연구소 - 제18호 창고시설 위 내용의 1 및 2에 따른 시설은 본 계획에서 정하는 「한국표준산업분류표」 중 다음의 업종에 대한 각 호의 시설에 한함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26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- C28 전기장비 제조업 -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-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52 물류시설 신·재생에너지 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35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정보통신·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M70 연구개발업 <p>[지원시설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중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. 전시장 - 제14호 업무시설(일반업무시설) <p>※ 산업시설 용지는 연면적 50% 이상, 지원시설 용지는 연면적 50% 미만</p>
	불허용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
건폐율	1. 60%이하	
용적률	1. 400%이하	
최고층수	1. 7층이하	